

판결요지서

□ 사건의 경과

사 건 번 호	2005나89300
원 고	주식회사 ○○
피 고	최진실 외 1인
항소 제기일	2005. 10. 31.
판결 선고일	2006. 5. 2.
쟁 점	유명 여배우가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현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광고모델계약상 '사회적·도덕적 명예훼손'에 해당하는지 여부
결과 (주문)	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승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고 패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일부 승소(제1심 판결 일부 취소)
참 고 조 문	민법 제390조, 제398조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가. 원고는 유명 여배우인 피고 최진실 및 그 매니지먼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위 계약에 의하면 위 피고는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회적·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광고모델료 2억 5,000만 원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나. 그런데 피고 최진실의 전남편 조○○이 새벽에 위 피고의 집을 찾아와

말다툼 끝에 위 피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, 그 후 조○○이 경찰조사와 기자 인터뷰를 통해 쌍방폭행을 주장하자, 위 피고는 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붓고 멍든 얼굴과 가재도구 등이 부서진 채 널려 있는 위 피고의 자택 내부의 사진촬영을 허락하였고,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기사가 각 일간지에 게재되었다.

다.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이 위 광고모델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.

○ 쟁점

유명 여배우가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현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광고모델계약상 '사회적·도덕적 명예훼손'에 해당하는지 여부

○ 원고의 주장

피고 최진실의 위와 같은 언론 공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피고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고, 부부간의 분쟁을 가정 내에서 조용히 처리하지 않고 널리 알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스스로의 사회적·도덕적 명예를 훼손하고, 나아가 원고의 제품 및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광고모델계약을 위반하였고,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.

○ 법원의 판단

피고 최진실은 신체적 완력이 월등한 조○○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서(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·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), 조○○의 쌍방폭행 주장에 대하여 반박·해명할 목적으로 공개하기에 이른 것으로

보이고, 별거 중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때까지는 혼인생활 중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, 배우자의 폭력행위까지 숨기고 감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, 부부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, 피고 최진실의 위 언론공개 행위가 위 피고 자신의 사회적·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.

□ 판결의 의미

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'사회적·도덕적 명예훼손'의 해석에 관하여, 피고 최진실의 위 언론공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.